

제7절 심장의 장애

1. 장애등급 구분의 기준

장애등급	장 애 정 도
1급 8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불능상태로서 장기간의 안정과 상시 보호 또는 감시가 필요한 정도의 장애가 있는 자
2급13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극히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극히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
3급13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심한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
4급11호	○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하여 노동에 제한을 받거나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있는 자 - 심장을 이식받은 자

2. 인정요령

가. 심장의 장애는 다음 요령에 의한다.

- (1) 심장질환에 따른 장애란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장에 지속하는 비가역적인 기능저하가 인정되고, 호흡곤란, 흉통, 부종 등의 임상증상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검사, 심전도검사, 심장초음파검사, 운동부하검사, 핵의학검사, 심혈관조영술 등의 검사성적과 환자의 병력 및 병록지 내용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인정한다.
- (2) 심장기능 검사성적은 그 성질상 변하기 쉬우므로 심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판정한다.
- (3) 심장을 이식받은 자는 4급으로 인정하며, 임상증상 및 검사성적 등에 따라 다시 상위등급으로 인정할 수 있다.
- (4) 심장을 이식받은 자의 완치일은 심장이식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인정한다.

나.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, 검사소견 및 검사성적에 따른 장애등급별(1~3급)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(1) 1급: 부종, 호흡곤란,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, A표의 중증도가 4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1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 소견 중 3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
- (2) 2급: 부종, 호흡곤란,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, A표의 중증도가 3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2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 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
- (3) 3급: 부종, 호흡곤란, 흉통 등의 임상상태가 있고, A표의 중증도가 2에 해당하고 B표 심장질환 검사성적 3란 중 1개 이상의 소견이 있고 C표 심장질환 검사 소견 중 2개 이상의 소견이 있는 경우

<A표: 심장질환의 증상 중증도 구분표>

중증도	상 태
1	심장병은 있지만 신체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는 것,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
2	신체활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, 일상적인 신체활동으로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
3	신체활동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심장병환자, 경미한 일상적인 신체활동에서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는 경우
4	안정을 취할 시에도 심부전증상 또는 협심증증상이 일어나고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(호소하는 정도가 심해지는 경우)

<B표: 심장기능의 이상도 검사성적 지표>

구 분	검 사 성 적
1	1. 운동부하 검사상 2.5METs 이하인 경우 2.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20% 이하인 경우
2	1. 운동부하 검사상 5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.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30% 이하인 경우
3	1. 운동부하 검사상 7METs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2. 심초음파 혹은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률이 40% 이하인 경우

<C표: 심장질환의 검사소견표>

구 분	검 사 소 견
1	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폐울혈 또는 폐부종 소견
2	흉부 방사선의 소견에서 늑막삼출 소견
3	흉부 방사선상 심흉곽비 60% 이상의 심비대 소견, 심전도상 심비대, 심초음파상 심비대 중 하나 이상의 소견
4	심전도상 완전 좌각차단
5	심전도상 심방세동소견
6	심전도상 진구성 심근경색 소견 또는 ST분절 이상소견
7	부하심전도, 부하심초음파, 부하심장핵의학검사 중 하나에서 양성소견
8	심박조율기, 인공판막, 제세동기 중 하나 이상을 한 경우
9	심장초음파상 수축기압 50mmHg이상의 폐동맥고혈압 소견

다. 심흉곽비는 흉부 방사선사진을 초점거리 2m로 촬영하여 측정한 음영의 좌/우 끝에 각각 정접하는 연직선간 거리를 좌우의 횡격막늑골각을 통하는 연직선간 거리로 뺀 백분율로 산출한다.